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나6952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장연실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9. 9. 10.

판결 선고 2019. 10. 10.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가단42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이 사건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그의 소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B의 자녀인 C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다.

나. C은 육군에 복무중이던 2017. 10. 14. 07:50경 강원 철원군 15사단 38연대 2대대 부근 도로에서, 영점사격 훈련을 위하여 군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후미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 차량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고 차량에서 떨어져 척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인 피고 차량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C이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하여 2017. 11. 23.까지 C에게 133,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무보험자동차인 피고 차량에 탑승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C은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도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등 참조), 군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군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군인이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등 참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공상 확인을 받았고, 2018. 1. 25. 만기전역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군인연금법에 기하여 2018. 3. 23. 1차 8,333,910원, 2018. 8. 10. 2차 2,777,970원, 합계 11,111,880원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군인으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권리를 대위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C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직이 아니라, 의무복무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퇴직하였고,

전역일인 2018. 1. 25. 이전 또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군인연금법상의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군인연금법은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전역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8. 3. 23. 피고로부터 군인연금법에 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③ 군인연금법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902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C은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의무복무기간종료로 전역하였더라도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또, 군인연금법상의 장애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판결선고일'이 아닌 '보험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C은 육군에서 퇴직하지 않은 상태로 장애보상금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배상요건 발생 당시에는 성립하였다가 장애보상금 청구권 등의 발생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장애보상청구권 등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성립하게 되므로, 이러한 보상청구권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에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수도 없다. 결국 군인이 아직 퇴직하지 않아 장애보상금을 곧바로 청구할 수 없더라도 퇴직 이후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당시 C에게 장애보상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당초부터 성립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고, 원고가 보험자로서 이를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

결국 피고의 항변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 원, 판사 김유성, 판사 최은주